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55호

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05호(2017.8.17.)로 고시된 “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정사유 :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결정(변경)도 상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경계 착오에 따른 정정

※ 이 외 정정사항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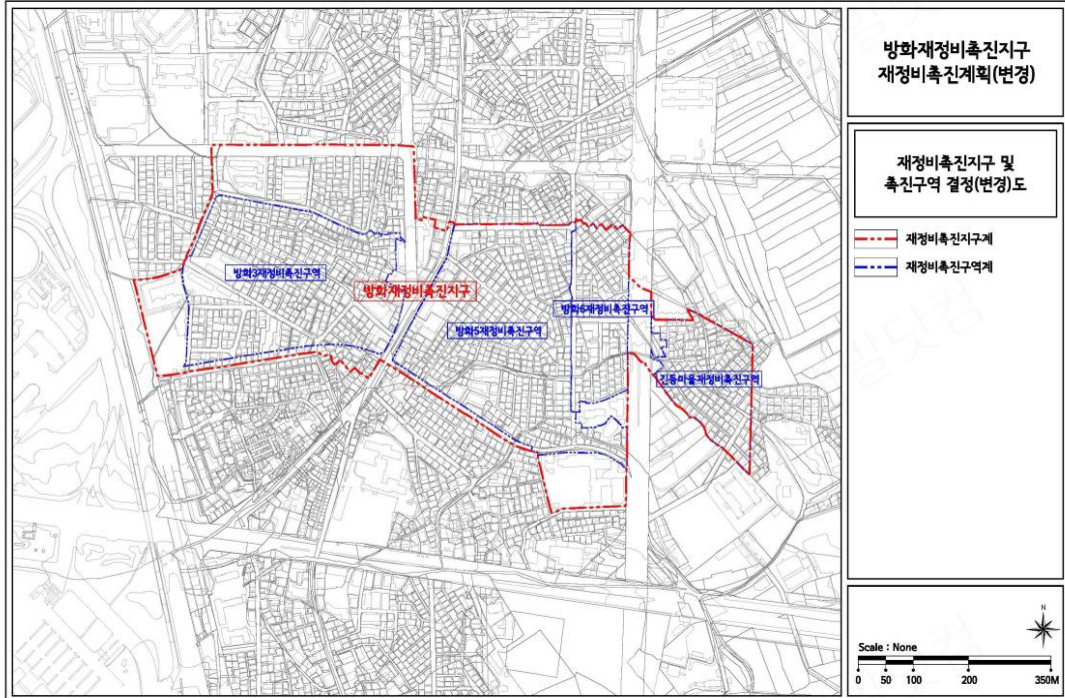
2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」 참조 :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4)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(☎02-2600-6385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<정정 전>



<정정 후>

